

「오픈뱅킹공동업무」 금융정보조회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19. 10. 24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「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」 금융정보조회 약관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<u>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</u>을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 사이에 <u>핀테크</u> 서비스를 통한 금융정보조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2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“<u>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</u>”이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서비스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말합니다.</p> <p>② “<u>핀테크 기업</u>”이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. (신 설)</p> <p>③ “<u>금융정보조회</u>”란 사용자가 <u>핀테크</u>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시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④ “<u>오픈플랫폼중계센터</u>”란 <u>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</u>을 구축하고</p>	<p>「<u>오픈뱅킹공동업무</u>」 금융정보조회 약관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<u>오픈뱅킹공동업무를</u> 기반으로 <u>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이용기관</u>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 사이에 <u>이용기관</u> 서비스를 통한 금융정보조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제2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“<u>오픈뱅킹공동업무</u>”란 <u>이용기관과 참가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(조회, 이체)를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·제공하는 업무를</u> 말합니다.</p> <p>② “<u>이용기관</u>”이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<u>오픈뱅킹공동업무</u> 이용승인을 받은 <u>핀테크 사업자와 은행</u>을 말합니다.</p> <p>③ “<u>참가은행</u>”이란 <u>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,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</u>을 말합니다</p> <p>④ “<u>금융정보조회</u>”란 사용자가 <u>이용기관</u>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시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</p> <p>⑤ “<u>오픈뱅킹중계센터</u>”란 <u>오픈뱅킹공동업무를</u> 구축하고 운영하며,</p>	<p>약관 명칭 변경</p> <p>용어 수정</p> <p>용어 및 내용추가, 수정</p>







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2조 (생략)</p> <p>부칙 이 약관은 2017. 4. 12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2조 (좌동)</p> <p>부칙 <u>제1조 (시행일)</u> 이 약관은 2019. 10. 24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 <p><u>제2조 (기존 약관의 적용)</u> “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이용기관”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오픈뱅킹공동 업무가 전체 이용기관으로 확대시행 전까지 기존 「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금융정보조회 약관」을 적용하기로 하며, 확대시행일은 오픈뱅킹중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</p>	<p>내용 추가 (기존약관 적용)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